

나치의 장애인 탄압에 대한 독일교회의 태도에서 살펴본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의 신학적 고찰*

**A Theological Examination of the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German Church's Attitude toward Nazi Persecution of the Disabled**

김기흥 (Ki-Heung K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 of the German church at the time regarding the Nazi repressive policies of forced sterilization and euthanasia programs for the disabl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rough this, it seeks to explore the essential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within the context of a Christian worldview. The Nazi regime's policies of oppression against the disabled were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disabled and the mentally ill as 'lives unworthy of living', based solely on criteria of 'race' and 'usefulness'. In response, most Christian churches at the time displayed attitudes ranging from indifference to complicity and cooperation regarding the Nazi regime's policies on the disabled.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se research findings. First, establishing a view of humanity that recognizes the absolute and unconditional dignity of all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s an essential element. Seco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and Christians includes inclusive church ministry rather than discrimination or segregation toward the disabled. Third, the co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lies in fulfilling God's will through cooperation and respect, while acknowledging each other's unique functions and roles within God's sovereignty and authority.

Key words: Hitler's disability policy, social responsibility of church, church-state relationship

* 2026년 2월 10일 접수, 6월 12일 최종수정, 6월 12일 게재확정

** 부산교육대학교(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등특수·유아교육과 교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e.ac.kr

I. 서론

교회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골자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또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김정훈, 2023: 46-47 ; 최용준, 2020: 38-39).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모든 권세나 국가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견지한다. 이 입장은 인류사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수 세기 동안 언제 어디서나 거의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특히 독일 나치(1933- 1945)는 국가 차원에서 무자비한 장애인 탄압 정책을 펼쳤다. 히틀러는 인종주의(racism)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를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을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보고 강제 불임시술과 강제적 안락사를 저질렀다(Aly, 2005: 55-59). 장애인 복지나 교육에서 기독교 사상과 교회는 공적 사회복지 시스템 형성의 기초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개선에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실적 이해 측면에서는 시대나 문화적 배경 또는 문맥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성경해석의 오류로 오랫동안 왜곡도 없지 않다. 루터(Luther)는 기형아를 사탄에 의해 바뀐 영혼 없는 ‘살덩어리(lump of flesh)’로 묘사했고, 또한 쓸데없이 먹고 마실 뿐이므로 출생 후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고도 했다. 뇌전증이나 정신 질환도 귀신 들린 것으로 보아 교회조차도 장애 발생 원인을 지나친 전통적 미신과 인과응보 사상에 두기도 했다(Mattner, 2000: 21-23).

여기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이며, 또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은 무엇인가?’라는 기본 질문이 제기된다.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social responsibility)이란, 교회론에서 교회의 속성과 본질, 사명 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의미로써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김재성, 2023). 교회라는 조직체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일련의 하나님 주권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을 본질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왜곡된 세상의 권세나 가치관에 대해 교회는 무시하거나 무관심보다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현실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기독교 본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은경, 2012: 177-180).

1933년 나치의 권력 장악 후 모든 공공 생활 영역을 체계적으로 국가화하는 소위 ‘일체화’(Gleichschaltung)’에 따라 기독교계도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개신교계가 초기에는 히틀

리의 반공주의와 반자유주의 등 정치 이념에 공감했다. 또 가톨릭도 나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이를 실천하는 동질적 독일인 집단을 의미하는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에 호응했다. 더욱이 양측 모두 베르사유 조약을 불공정하고 수치스러운 조약으로 여긴 나머지 개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독재 정권은 두 교파에게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1932년 여름 독일 기독교인회(Deutsche Christen)가 창립되어 나치당은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포섭하고자 했다. 1933년 나치당원 뮐러(Müller)가 독일 기독교인 회의 새 제국 주교로 선출되면서, 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상실하였다. 그는 교회 단체에게 히틀러 청소년단(Hitlerjugend)에 복종하도록 강제했고, 교회 내에도 소위 ‘총통 원칙’(Führerprinzip) 아래에서 히틀러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겼다. 1933년 늦여름에는 교회 직원과 관련하여 소위 ‘아리아인 조항’(Arierparagraph)이 도입되어 유대인의 전문직 종사를 금지하고 공개적인 차별을 시작했다. 1933년 9월, 독일 기독교인회와 제국 교회(Reichskirche)에 대항하는 목회자 비상동맹(Pfarrernotbund)이 결성되었다. 이때부터 유대인, 신티족, 로마족, 공산주의자, 정적 및 동성애자 등 소위 ‘제국의 적’들은 나치에 의해 공개적으로 차별받고 체포되었다. 1934년 바르멘신학선언(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에서 비상동맹 회원들은 나치당의 인종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Krumeich, 2010: 106-110).

나치 정권 이전(1930-1933년)에도 가톨릭교회는 나치즘이나 나치당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비스마르크(O. v. Bismarck) 정부 내에 가톨릭 정당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던 ‘문화투쟁’(Kulturkampf)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히틀러는 교회를 거둬 지지하고, 1933년 정부 선언에서 ‘교회는 우리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까지 칭송하자, 구교는 나치 정권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1933년 3월 24일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수권법(Ermächtigungsgesetz) 제정으로 가톨릭교회의 모든 법적 보호 장치는 사라졌다. 1933년 교황 피우스(Pius XII, Eugenio Pacelli) 12세 때 독일제국과 바티칸의 협약(Konkordat)에 따라 가톨릭 서적 배포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하지만 성직자나 사제의 정치활동은 금지되고, 나치의 공포 정치 시기(1933-1939)에 정권에 따르지 않는 성직자들은 박해를 받고 투옥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33년부터 소위 ‘제국의 적’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어 1935년 반유대주의법인 뉘른베르크법(Nürnberger Gesetze) 제정으로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다. 교회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정치적 조치뿐만 아니라, 1938년 11월의 유대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도 침묵을 지켰다. 더 나아가, 제2차 대전 후,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에 따라 독일 제국은 장애인에 대한 계획적인 안락사 범죄를 행했다. 그들에게 장애인은 ‘제거해야 할 불필요한 국가의 짐’으로 여겼는데, 이는 강인하고 근면해야 하는 나치의 독일인 이미지나 경제나 군사 분야에 부합하지 않은 존재로 본 까닭이다. 이때

1941년 8월, 가톨릭 주교 폰 갈렌(von Galen)은 설교에서 장애인 살해를 강력히 비판하여 큰 사회적 반향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 살해를 막을 명시적 법이 없었고, 단지 공개적인 비난에 그쳤기 때문에 종전까지 은밀하게 이어졌다. 또한 유대인 홀로코스트에도 많은 성직자들이 침묵을 지켰지만, 개신교 측에서 나치 정권에 공개적 항의에는 1934년 바르멘 선언에서 비판한 본회퍼(D. Bonhöffer) 목사가 있다(Piper, 2007).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야후 독일 검색 포털서비스(de.yahoo.com/)를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검색어를 통해 각종 논문, 참고문헌, 보고서 등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어 연구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 개괄적 분석 후, 나치 정권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교회의 반응과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본 연구는 나치 정권의 장애인 정책과 이를 통한 교회의 태도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 고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나치의 장애인 탄압 정책의 핵심 내용인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서 이에 대한 당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계의 전체적인 태도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시 교회의 태도를 통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하여 신학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히틀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에 대해 개관한다.

둘째, 히틀러의 장애인 탄압 정책에 대한 당시 독일교회의 주요 태도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나치의 장애인 탄압 정책: 강제적 불임 시술(Sterilization)과 안락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를 바탕으로 정신 질환자나 지적 장애인 등 약 40만 명이 강제적 불임 시술의 희생자였다. 또 최소 25만 명의 정신 질환자, 지적 및 지체장애인이 소위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분류되어 강제적으로 안락사를 당하였다. 여기에는 인간의 가치나 존재 의미를 지나치게 경제적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1930년대 초 대공황 시기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둘러싼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 강제적 불임시술

나치 시대는 건강한 독일인에게만 자녀 생산이 허락되는 규정에 따라 유전적 장애나 정신질환자는 강제적 불임 시술을 받아야 했다. 인종 위생과 우생학의 핵심 기반에는 1852년 고비노(A. Gobineau)의 ‘인종 이론(race theory)’과 1864년 스펜서(H. Spencer)의 사회적 다윈주의, 즉 생물학적 진화는 적자생존 법칙을 따른다고 하였다. 또 골턴은 1833년 우생학을 정립했고, 1895년에 플뢰츠(A. Plötz)가 ‘인종 위생’ 용어를 도입했다. 여기서 소위 ‘긍정적 우생학’, ‘긍정적 인종 위생’의 목표는 사회적 존경을 받거나 바람직한 가계의 다산을 장려하는 유전 인자의 개선이었다. 그러나 ‘부정적 우생학’, ‘부정적 인종 위생’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생존 보장을 위해 ‘나쁜 유전자’는 제거하여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려고 했다. 우생학과 인종 위생 개념은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덴마크, 핀란드도 1920년대 후반부터 복지 국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불임 시술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1927년 독일 ‘카이저 빌헬름 인류학·인간 유전학·우생학 연구소’와 1931년의 ‘독일 정신의학 연구소’의 설립은 이미 나치의 인종 정책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었다(Raim, 2013: 45-49).

1933년 7월 14일 나치 정권 수립 직후 강제 불임 시술법인 ‘차세대 유전성 질병예방법(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이 제정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의학적으로 자녀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인 유전적 결함 가능성, 즉 나치의 인종적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는 ‘열등한’ 경우 강제적 불임시술이 합법화된 것이다. 선천적 정신박약, 조현병, 순환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 유전성 성 헌팅턴 무도병, 유전성 시각장애, 청각 장애, 중증 유전성 신체 기형, 중증 알코올 중독 등이 대상자였다. 1934년부터 1945년까지 총 40만 명의 남녀가 희생되었고, 그중 약 5천 명이 열악한 의료 환경과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이는 주로 외과적인 시술이었지만, 38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엑스선과 라듐 방사선을 사용하기도 했다(Piper, 2007: 55-60).

이 법의 정치적 배경은 인구나 인종 정책을 위한 조치였고, 유전적 장애인의 생식을 금하고, 인종 혼합에 맞서고, 다자녀를 둔 ‘가치’ 있고 건강하며 인종적으로 ‘유능’한 가정의 의도적 육성이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시 유전적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사이코패스, 유전적 범죄자, 반사회적 행위자를 위한 지출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소비 감소의 심화 현상을 우려했던 것이다(Benzenhöfer, 2006: 15-17).

또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연합군의 라인란트(Rheinland) 점령 때에 일부 흑인 군인과 독일 여성 간에 태어난 독일 아이들은 소위 ‘흑인 수치’, ‘독일의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이에 1936년 라인란트 해방 후 나치는 400-800명을 라인란트 사생아로 등록해 1937년까지 강제 불임

시술을 단행했다. 이는 유전 건강법에 따른 우생학적 조치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인종적 이유로 총통 명령과 제국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비밀경찰(Geheime Staatspolizei) 특별 작전으로 이루어졌다. 또 인종차별적이고 노동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 강제 노역자에게 강제 불임시술과 강제 낙태가 행해졌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는 유전 건강법을 어기면서 건강한 수감자에게도 대량 불임시술이 있었다(Bock, 1986: 45-71).

2. 안락사 프로그램

19세기 후반 인종적으로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둘러싼 우생학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긍정적 우생학’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나치즘 치하에서 ‘열등’한 인종으로 낙인된 사람에게 자행된 국가적 범죄를 단순히 우생학에서 정당성을 찾기에는 희생자 수나 대량 살상의 근간이 된 세계관의 극단성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나치 정권은 사회적 약자의 멸절 정책을 ‘안락사(Euthanasia)’라 했는데, 이는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을 뜻하는 단어의 냉소적 변형이다. 이 본부가 베를린 티어가르텐가(Tiergartenstr.) 4번지로 일명 ‘T-4’라 불리고, 책임자인 보울러(P. Bouhler)는 의사, 간호사들과 함께 많은 병약자와 장애인 살해에 가담했다(Klee, 1983: 55-60).

1920년 법학자 빈딩(K. Bining)과 정신과 의사 호헤(A. Hoche) 저서 ‘삶의 가치가 없는 생명 멸절의 허가’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미 논란이 되었는데, 후일 나치의 ‘안락사’ 정책에 핵심 토대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삶의 가치가 없는 존재’로 분류되고,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병자나 장애인 살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왜곡되었다. 안락사 프로그램은 대개 제2차 대전과 함께 시작되지만, 국가적 대량 학살의 구체적 준비는 이미 1939년 초였다. 또한 동년 8월 18일 제국 내무부의 ‘아동 안락사’ 관련 극비 문서인 회람령은 수천 명 아동의 조직적 대량 학살의 단초였고, 이어 성인들까지 포함되었다. 나치는 의사와 조산사에게 ‘심각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영유아를 제국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처음에 3세까지의 아동이고, 이후에는 16세까지로 했다. 전국 40여 곳의 정신병원 내 소위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고, 루미날, 모르핀 등의 약물 주사나 영양실조로 약 5천 명이 숨졌다. 또 병들거나 장애 성인에 대한 조직적 살해를 위한 준비도 진행했는데, 보울러와 브란트는 나치로부터 1939년 10월에 서면 승인을 받았다. 특히, 전쟁과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명령은 전쟁 시작일인 1939년 9월 1일로 소급 기재되었다(Hamm, 2005: 45-47).

이처럼 안락사 프로그램은 사회적 다윈주의의 원시적 형태에서 비롯되었고, 나치에 의해 극단적으로 변질되었다. 나치는 1930년대에 ‘안락사’ 문제를 대중과 학생에게 선동하고 주입했고, 1939

년 초에 모든 관련 시설의 환자마다 등록 양식을 작성토록 했다. 여기에는 환자 병력, 입원 기간, 근로 능력 및 회복 전망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정신분열증, 간질, 뇌염, 정신박약, 마비, 헌팅턴 무도병, 노인성 치매나 기타 신경학적 말기 질환자(취업 불가능이나 단순 작업 가능한 자), 5년 이상 시설 입원 환자, 범죄 혐의가 있는 정신 질환자, 독일 시민권이 없거나 독일 관련 혈통이 아닌 자가 대상이었다. 이러한 등록 서류를 통해 베를린의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했고, 대상자들은 비영리 구급차 단체(Gemeinnützige Krankentransportgesellschaft)에 의해 학살시설로 이송된 후 가스로 살해되었다(Kaiser et al., 1992: 236-240).

당시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에서 약 3만 명, 나치의 점령지, 합병지에서 15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종전 시에는 병으로 노동 불가능한 강제 수용소 수감자 중 2만 명도 살해되었다. 이때 나치는 대량 학살의 정당화 근거로 ‘자비의 행위(Gnadenakt)’, ‘구원의 행위(Akt der Erlösung)’라 표현했다. 나치는 자주 단순한 비용-편익 분석을 인용했고, 1940년 4월 3일 친위대(SS) 책임자인 브락(V. Brack)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요성을 심고 안락사 프로그램을 선동하였다.

…수많은 온갖 종류의 불치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인류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짐이 되어 끝없는 치료비를 초래한다. 동물처럼 무의미하게 살고, 반사회적이며, 생명의 가치도 없다. 이들은 타인의 음식을 빼앗아 갈 뿐이며, 종종 두 배, 세 배의 치료가 필요하다. 오늘날 건강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수용된 치료 가능한 환자의 보존을 위해서 이런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사회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준다(이하 생략).(Aly, 1985: 32-38).

당시 관련 병원과 정신과 병동 원장은 관련 당사자에 대해 베를린에 보고하였는데, 보고서 양식에는 파란색 ‘-’는 ‘생존’, 빨간색 ‘+’는 살해 대상으로 ‘사망’을 의미했다.

III. 나치의 장애인 탄압 정책에 대한 독일교회의 주요 태도 개관

1933년 나치는 권력 장악 후 소위 ‘일체화(Gleichschaltung)’로 사회의 전 영역은 물론 독일교회의 사회적 영향력도 완전히 억제하는데 종교 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이때 히틀러식 경례 거부나 강제 노역자 식량 공급, 뼈라 제작, 반히틀러 운동가 은닉 등의 저항과 더불어 42차례 암살 계획과 실

행도 있었다(Berthold, 1981: 50-55).

당시 양대 교파인 개신교와 가톨릭계는 나치 이념과 정책이 본질적으로 기독교 사상에 반함에도 소수 외에는 대부분 저항 의지나 노력은 거의 없었다. 사실 반기독교적인 인종주의나 사회적 다원주의 정책은 기독교회가 정치 이념에 야합하고 독재자와 정권의 신성화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등 실질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처럼 교회는 히틀러의 전국적인 장애인 탄압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거의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독일 신학자이자 역사가인 카이저(J.-C. Kaiser)는, 당시 거의 모든 교회 관계자는 대량 학살에 공개적 비판이 없었고, 교회 설교나 교구 모임에서도 대중의 인식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기독교계 일부의 항의도 미약하고 온건하여 전후에 교회는 나치 정권에 대한 저항 용기가 없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한 예로, 많은 개신교 병원에서 직원들은 ‘차세대 유전성 질병 예방법’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강제 불임 시술에 동참했음을 시인했다(Kaiser et al., 1992: 38-41).

당시 개신교회는 통일된 의견이 없었는데, ‘독일 기독교인’, ‘고백교회’ 등 나치당 정부나 교리 등에 따라 분열되었고, 28개의 지역 교회는 독일 복음주의 교회 연맹이라는 느슨한 연합체로 연결된 정도였다. 더구나 루터(M. Luther)의 ‘두 왕국 교리’로 인해 개신교회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개신교의 전통’이 존재하여 세속 권력과 특정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가톨릭교회는 나치의 장애인 강제 불임 시술에 반대했지만, 안락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가톨릭교회는 바티칸과 독일 제국 간의 국가 조약인 제국 협약으로 교회 투쟁의 종식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다. 또 가톨릭교회는 비밀경찰 특별위원회의 수사를 통해 협박에 취약했는데, 이는 수천 건의 아동 학대 사건에 연결되어 많은 사제와 가톨릭 보호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이었다. 이에 독일 가톨릭계는 1945년 8월 23일 사목 서한을 통해 가톨릭교회가 지난 12년간 나치 범죄의 가담 사실을 고백했다. 또 개신교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KD)도 1945년 10월 18/19일 ‘슈투트가르트 고백서’를 통해 자신들도 독재 정권에 적극 동조했음을 최초로 인정했다(Aly, 2005: 12-15).

이에 나치의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에 대한 당시 독일 기독교계의 태도를 연대기 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김용환, 2021: 144-145; <https://theologe.de>).

나치의 장애인 강제 불임시술과 안락사 정책의 우생학적 이론의 배경에 정신과 의사 호헤(A. Hoche), 법률가 빈딩(K. Binding)의 저서 ‘삶의 가치가 없는 생명 멸절의 허가’(1920)가 있다. 특히 호헤의 부친은 개신교 목사였고, 호헤는 ‘정신 장애인’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도덕적 부담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안락사’가 범죄도, 부도덕한 행위도 아닌 가능하고 유용한 행위라 주장했다(Klee, 1985: 35-39).

반면에, 의사이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멜처(E. Meltzer)는 1925년 논문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낙태 문제’에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살해 주장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법적, 윤리적 이유로 거부되어야 한다’며 빈당과 호혜를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논문 발표전인 1920년 자신이 돌보는 아동들의 부모에게 ‘전문가가 자녀를 불치병인 정신 장애로 진단한 경우, 고통 없이 자녀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라 물었다. 이에 부모들의 73%가 동의했고, 그의 연구 결과는 나치의 장애인 살해 책임자들이 국가가 명령한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었다(Aly, 2013: 28-35).

특히, 1920년대 유대인 탄압과 함께 ‘안락사’라 불릴 장애인 말살이 신학계에서도 이미 준비된 셈이었다. 가톨릭 도덕 신학자 마이어(J. Mayer)가 1927년 저서 ‘정신 질환자의 합법적 불임시술’을 출간했다. 그는 당시 새로운 우생학에 대해 수용적 입장을 가졌으며 자신의 저서에 ‘사회적 비상사태’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우생학, 심지어 안락사까지 정당화했고, 1940년에는 나치 돌격대 지도자 하르틀(A. Hartl)에게 안락사에 대한 가톨릭 입장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그는 장애인의 성생활에 대해 “유전적인 정신질환자들은 본능적 삶에서 비이성적인 동물 수준이다”라며, 신약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벤허 2: 12)”를 인용했다. 이에 그는 어떤 사람이 유능하지 못하고 전체 공동체에 위협하거나 어떤 범죄를 통해 공동체를 타락시키려 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죽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유익하다고 보았다. 결국, 그의 저서 출판 13년 후인 1940년 장애인 살해에 앞서 강제적 불임시술이 단행되었다. 사실 바티칸은 개신교 입장과는 달리 1930년 장애인 탄압 정책을 반대했지만, 독일 로마 가톨릭 기관은 이후 불임 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을 국가의 ‘정당방어(Notwehr)’라는 명분 아래 개신교 기관들처럼 당국과 협력했다(Bock, 1986: 58-60).

개신교계도 가톨릭에 못지않은 잔혹한 사고방식이 만연했다. 1931년 3월 25일, 바이에른주 노이엔데텔자우(Neuendettelsau) 선교회는 마이저(H. Meiser) 수석 교회 평의원과 협의를 거쳐 최초로 나치당(NSDAP)을 ‘극비 회담’에 초청한 개신교 기관이었다. 약 30명의 개신교 신학자 앞에서 이 지역 선교회 책임자인 에펠라인(F. Eppelein)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나치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정당과도 이 같은 방식으로 교류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후 노이엔데텔자우의 장애인 대다수는 독일 전역으로 강제 이송되어 죽음을 맞이하였다.

1931년 5월에 헤센주 트레이사(Treysa)에서 독일 개신교 국내선교회 소속 기관 책임자들이 ‘개신교 우생학 회의’를 열었다. 이때 불임 시술과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멸절’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소위 ‘트레이사 선언’은 장애인의 강제 불임 시술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베텔 출신의 저명한 목사 폰 보델슈빙(von Bodelschwingh)은 이것이 ‘예수의 뜻’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미 1929년 1월 29일 ‘삶의 가치가 없는 생명인가?’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신체와 정신이 약한 열등

한 자들의 증가'를 언급하며, 이러한 위협을 피하는 방법으로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를 제시했다. 1934년부터 베텔(Bethel)의 약 3,000명의 장애인 중 최소 1,176명이 강제로 불임 시술을 받았는데, 그는 이를 환영하였다. 또 1938년 7월 21일 히틀러에게 충성 서약을 하기도 했지만, 국가의 교회 정치 개입이 증가하고 나치의 인종주의적 목표가 명확함에 따라 후에는 나치즘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1939년 'T-4'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환자의 조직적 살해가 시작되었다 이때 그는 나치와 협력을 지연시켜 자신이 운영한 요양 및 치료시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등 기독교 신념에 따라 이들의 살해를 적극적으로 단호히 거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치의 학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당국과 주요 의사들과 토론하며,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 브란트(K. Brandt)에게 직접 범죄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Hellmann, 1988: 55-61).

당시 교회 기관 수장들은 장애인의 멸절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불일치하였다. 1931년 국내 선교 중앙위원회 '의료' 부서 책임자이며, 우생학자인 하름젠(H. Harmsen)은 국가가 범죄자와 전쟁 상황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를 파괴할 권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1940년 이후의 대량 학살은 교회 당국의 광범위한 무언의 동의와 공모하여 자행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기독교계 장애인 복지 시설의 장애인 가족들은 교회를 믿고 맡겼지만, 교회의 책임자들이 이미 장애인 살해 여부를 비밀리에 논의·동조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때 중증과 경증 장애인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도 장애 정도에 따라 '살 가치가 있는' 또는 '살 가치가 없는' 삶으로 각각 구분했다(Klee, 1985: 88-90).

1933년 7월 14일 이미 '차세대 유전성 질병 예방법'은 장애인 강제 불임 시술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국내 선교 기관 대표들의 1931년 '트레이사' 선언의 요구가 나치로부터 수용된 것이었다. 1933년 독일 중서부 쇼이에른 안 데어 란(Scheuern an der Lahn) 지역 국내 선교부의 개신교 치료교육 및 요양원 책임자 토트(K. Todt)는 타 기관의 책임자들처럼 유전병 자녀의 출산 방지법에 열광하였다. 그는 "우리는 악을 뿌리부터 척결하기 위한 서막인 총통의 인종 위생 조치를 환영한다. 이 조치는 악의 근원과 싸우는 전주곡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새로운 제3 제국 건설에 기꺼이 봉사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 지지했다(Klee, 1983: 44-50). 그 후 1941년 이 지역 개신교 기관들은 메제리츠-오브라발데(Meseritz-Obrwalde) 강제 수용소로 가는 장애인들의 중간 기착지고, 교회 기관에 위탁된 이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또 1940- 1941년에 베른부르크(Bernburg)의 국립 치료 및 요양 병원에서도 큰 희생이 있었지만,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개신교 오버린 하우스의 여집사들은 무저항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1933년부터 개신교 여수도원(Diakonissenmutterhaus)에서는 히틀러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있었다. 독일의 가장 오래된 개신교 여수도원 소식지에 여집사 오버마이어(A. Obermeier)의 민족사회주의를 칭송하는 노래까지 실

리기도 했다(Hamm, 2005: 69-72).

1933년 9월에는 함부르크의 개신교 복지기관 라우헤 하우스(Rauhe Haus) 설립 100주년 기념일에 회장 쉬르마허(T. Schirmacher) 목사는 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동하였다. “우리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돌격대(Sturmabteilung), 교회의 친위대(Schutzstaffel)로 맞이한다. 여러분은 궁핍, 비참함, 절망, 죄악, 부패와 싸우는 용감한 돌격대원, 친위 대원... 독일에서 개신교 집사들은 민족사회주의와 함께 한다”라고 했다. 이후 개신교 집사들의 나치 돌격대 가입이 늘고, 또 1933년 7월에 개신교 복지기관인 디아코니(Diakonie)가 나치 돌격대로부터 강제 수용소 운영권을 받았다. 그곳 교회 직원은 모두 나치 돌격대원이며, 개신교 국내 선교부로부터 임금을 받았다(Klee, 1985: 38-43 ; 61-71).

1937년 4월 5일 개신교 노이엔데텔자우(Neuendettelsau) 복지 시설의 정신과 의사이자 나치당원이자 루터교인 뵈크(R. Bökh)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모든 환자는 짐이다. 어떤 사람을 멸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창조주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손에 권력을 진 사람에게 달려 있다. 오직 총통만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허용되어 있다”라 했다. 그는 나치의 장애인 정책을 일부 따른 보델슈빙 목사의 추천으로 이 기관에 10년간 수석 의사로서 교회 시설에 위탁된 2천여 명의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후 1939년 노이엔데텔자우 장애인 복지 시설의 책임자이며 개신교 신학자인 라우러(H. Lauerer)도 루터교의 ‘두 왕국 교리’를 인용해 장애인에 대한 계획적이고 압박한 대량 학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학적 승인을 하였다. “...우리 루터교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국가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가 행동할 때 반대할 권리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나치 정권은 약 1,200명의 환자를 노이엔데텔자우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한 후 결국 안락사를 자행했다. 이는 기독교계가 민족사회주의의 ‘안락사’ 이념과 장애인 정책에 재차 공감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Klee, 1985: 180-185).

1940년 1월부터 소위 ‘살 가치가 없는 목숨’의 말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동년 4월 바이에른주 개신교 기관에서 대상자 등록이 있고, 이어서 가스실에서 살해되었다. 또 같은 해 4월 15일 바이에른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1940년 4월 20일 히틀러 생일에 대대적인 지지와 찬양 일색의 성명서 발표를 하기도 했다(Wehr, 1989: 175).

그 반면, 베스트팔렌(Westfalen) 주 개신교 신학자, 목사인 빌름(E. Wilm)은 ‘불치병 환자 살해’에 대한 비판적 강연 때문에 1940-1941년에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또 고백교회 소속 신학자 뎀(H. Diem)은 1940년 뷔르템베르크 지역 주교 부름(T. Wurm)에게 보낸 신학 보고서에서 신학적 근거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이웃을 미워하는 것, 전쟁 중 정당방위가 아닌 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서도 안 되고, 신앙을 부인하거나 협박이나 약속에 넘어가 교회를 떠

나서도 안 된다'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어 로베탈(Lobetel) 지역 정신 장애인 시설장인 개신교 브라우네(P.-G. Braune) 목사도 초기에는 나치에 우호적이지만, 이어지는 나치 독재의 횡포에 비판한 기독교계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치의 'T-4' 작전에 직면해 1940년 3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당시 개신교 국내선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국 인맥을 활용해 조직적 살인 프로그램의 진행을 조속히 밝혔고, 동년 7월 9일 제국 총리실에 '환자 살해 반대 각서'를 보내며 폭로했다. 이에 그는 국가 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방해 혐의로 8월 12일 게슈타포에 의해 자택 압수 수색 후 연행되었다. 그는 1940년 10월 31일 석방되었는데, 석방되기 전 국가와 당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더 이상 없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그는 1954년 사망할 때까지 로베탈 지역의 요양원 원장으로써 종전 때까지 많은 환자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데 공헌했다(Berthold, 1981: 46-55).

1940년 7월부터 장애인들은 바이에른 개신교 복지 시설에서 선별되어 죽음의 가스 실로 이송되었다. 특히 바이에른 노이엔데텔자우에 있는 개신교 장애인 시설은 독일의 타 복지 시설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이송되어 희생되었다. 이때 개신교 의료 책임자였던 뵈크는 이미 장애인들을 소위 '유용성'에 따라 분류했다. 그리고 복지기관인 디아코니(Diakonie) 지도부는 공식 지시를 통해 여집사들에게 장애인 이송 시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책임을 묻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Wehr, 1989: 89-91).

한편, 1940년 7월 19일 개신교 신학자이며 목사인 부름(T. Wurm) 주교는 서신을 통해 제국 내무장관 프리크(W. Frick)에게 뷔르템베르크주 그라페네크(Grafeneck) 가스 시설의 장애인 살해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그는 유대인 박해나 전쟁에 대해 처음에는 총통과 당이 기독교적 원칙을 지켰다고 봤지만, 장애인 '멸절' 등 나치의 반교회적, 비인간적인 본성이 점점 더 드러남에 따라 당국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 예로, 교육에서 교회 배제, 안락사 프로그램, 유대인 말살 정책에 반대했지만, 결국 권위에 대한 자신의 신념 때문에 공개적인 발언은 할 수 없었다. 특히 부름(T. Wurm) 등 개신교 지도자들의 항의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단지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들이 작성한 서한은 비공개였고, 강단에서도 해명되지 않았다. 이는 고백교회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940년 10월 12일 라이프치히의 제9차 신앙고백 총회(Bekenntnissynode)서 안락사에 대한 신학적 보고서 의뢰 수준으로만 그쳤다(Klee, 1985: 69, 72).

한편, 1941년 8월 3일, 뮌스터의 가톨릭 주교 폰 갈렌(von Galen)은 나치 초기부터 게슈타포의 공포 정치나 가톨릭 수도원 몰수, 특히 병원과 요양원의 환자와 장애인 살해를 십계명 중 제5계명(살인하지 말라)을 어긴다고 공개 비판했다. 또 장애인 탄압은 '생명에 대한 범죄'이므로, 그는 동년 7월 28일 뮌스터 지방 법원 검찰청과 경찰청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우리의 형제자매이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혹은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명권을 박탈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산적인 존재로, 타인에게 생산적인 존재로 인정받아야만 살 권리가 있는가?”라 반문했다. 특히 람베르트 성당의 설교에서 안락사 범죄를 강력히 비판했고, 그의 설교는 복사되어 제국 전역에 배포되었다. 그는 설교에서 장애인을 비생산적이라 하여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보고 살해하는 정권을 비난한 소수의 독일 주교였다. 그는 “만약 비생산적인 동료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적용하면, 우리 모두 늙고 쇠약해질 때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라 했다. 특히 게슈타포가 수도원을 해산하고 수도승과 수녀들을 고향에서 추방하자, 설교에서 독일의 법치주의 부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같은 해 7월 13일 뮌스터의 람베르트 성당 강단에서 “모든 독일 시민과 국가 공동체는 비밀경찰의 물리적 우월성과 공포 정치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누구나 언젠가 집에서 끌려 나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밀경찰의 지하실과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될 것이다”라 설교했다. 당시 지역 나치 관리들이 설교 후 주교의 체포를 요구했지만, 가톨릭이 지배적인 베스트팔렌의 소요 사태를 우려했다. 특히 선전부 장관 괴벨스(J. Goebbels)는 “전쟁 중에는 가톨릭 순교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그에 대한 어떤 조치도 ‘최종 승리 이후’로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다. 결국, 독재 정권에 의해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 갈렌은 자신의 지위와 교인들의 지지로 종전까지 처벌받지 않고 살아남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나치 폭정에 대한 ‘양심의 승리’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의 이러한 저항적 설교가 이미 6만 명이 넘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즉 1940년 1월부터 1941년 8월까지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사실 교회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1940년 11월 27일에서야 로마 교황청은 독일의 안락사 문제를 다루며 무고한 국민에 대한 국가적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기독교회들은 거의 침묵을 지키며 안락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였고, 일부 개인들의 용감한 행동들도 외부에 공개적인 발설보다는 대부분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개신교 측에서도 모든 항의 서한과 편지들은 내부에서만 처리되었다. 이는 1945년 5월 8일 이후야 공개되어, 독일 교회사에서 어두운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Aly, 2013: 20-29).

특히 1944년 7월 30일 독일 개신교 교회 사무국과 개신교 교회 신임 평의회(der Geistliche Vertrauensrat der Evangelischen Kirchen)는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시도를 규탄하며, 충성 전보를 통해 히틀러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였다.

우리는 지도자의 구원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와 더불어, 지도자가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시대의

냉혹한 요구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게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충성의 서약과 결의를 다집니다(Das Evangelische Deutschland, 30.7.1944).

IV.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히틀러 정권이 장애인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 등의 탄압 정책에 대해 당시 독일 기독교계가 보인 태도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신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첫째, 모든 인간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존엄성을 본질적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인간(생명)관 정립이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Image of God)’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창 1:26-27). 인간이 가지는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 양식인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적, 도덕적 또는 영적 자질을 포함하는데, 이는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별하는 등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Stott, 박영호 역, 1985: 184-185). 또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엡 4:24)’ 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골 3:10)’라 표현하고 있다. 이에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승구, 2003: 131-132). 이어 김선권(2025: 210, 221)은 세 가지 범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였다. 먼저 실제적 해석으로는 이성적 영혼, 기능적 해석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 수행, 관계적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 및 타자와의 인격적 관계성을 각각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의 성육신과 대속으로 인간을 구속하시고 재창조하심은 창조 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고귀한 존재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기본법(GG) 제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성은 저촉될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 명시하고 있다. 헤셀베르거(Hesselberger, 1999: 60)는 법적인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칸트의 철학적 관점뿐 아니라,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용하고 있다. 또 독일은 기본법상 평등권에 있어서, 남녀, 혈통, 인종, 언어, 출신 국가,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불이익과 특혜를 금지하였다. 특히 1994년의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제3항에 ‘자신의 장애를 이유로 누구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첨가되어 장애인을 특정하여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나 편견 등 편애 주이나 특권을 경계하고 모든 사람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인정할 것을 강조(신 1: 16-17; 10:17; 16:18-19; 욥 31: 13-15; 잠 14:31; 갈 3:28; 약 2:1-9 등)한다. 이는 모든 인간은 개인의 특성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자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할 형제이자 자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틀러는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를 중심으로 ‘인종’과 ‘유용성’에 따라 차별과 불이익을 넘어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보고 강제적 불임 시술과 ‘안락사’ 범죄까지 자행했다. 이러한 나치 정치 이념과 국가의 불의한 권력 앞에 당시 기독교회는 대부분 무기력과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 독일의 대부분 신학자, 교회 지도자나 기독교계 장애인 복지 시설 책임자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망각한 채 국가의 범죄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더욱이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인해 인간관은 더욱 왜곡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오늘날 산업 사회에서 인간상도 상업주의의 타산적 문화로 인해 제품만 아니라 노동, 교육, 과학, 예술 등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일련의 매매, 거래, 교환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인간관계도 경제성, 생산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타산적 관계나 첨단기술을 통해 증가한 간접적인 접촉이 오히려 더 비인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임일남 외, 2003: 30-35). 한 예로,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생명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개정안은 기존의 ‘인공임신중절’ 개념에 약물 투여 등을 포함하고,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며, 유전적 질환, 강간 등 기존의 5가지 허용 사유를 삭제하였다. 이는 본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이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지원하고 정당화하는 낙태 지원법으로 둔갑했음을 알 수 있다(국민일보, 2026). 그 밖에도 ‘연명의료 중단’(동아일보, 2026)이나 ‘자살’(뉴스 1, 2026) 등 생명 윤리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회는 올바른 성경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심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통합적 교회 사역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성경 전체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는 약 160회 정도로 매우 많이 볼 수 있다. 구약에서 일부 장애를 차별이나 죄의 결과 등 부정적인 시선(레 21:16-23; 사 16:21 등)도 있지만, 보호와 소망의 대상이나 하나님의 섭리(레 19:14; 신 27:18 등)로도 나타난다. 특히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만 약 56곳에서 장애인과 환자 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치유 사역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장애인에 대해 무의미하고 배척하거나 차별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유와 구원 및 사회적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이계윤, 1996: 55-56 ; 김기흥, 2023:

56).

이러한 성경적 장애(인)관이 있음에도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현실적으로 일반 사회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별성이 있는가? 그 단적인 한 예로, 교육부(2026)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초·중·고 일반 학교의 장애 학생 통합비율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21: 72.2%; 2022: 72.8%; 2023: 73.3%; 2024: 73.7%; 2025: 74.1%)를 보인다. 그에 반해, 한창희(2016: 41-4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총 38,249개 교회 중 발달장애인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교회는 약 0.2% 정도(73개 교회)로 장애인에 대한 교회 내 통합은 물론 분리적인 측면조차도 관심과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독교계의 장애인 인식 조사(이만식, 2009: 54; 한정우·장옥례, 2018: 201-206 등)에서도 동정심을 비롯하여 시혜, 자선적 차원 등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임 목회자 등의 장애인이나 장애인 사역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도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선도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김중복, 2005 ; 김성원·허계형, 2017: 148-149).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엄연히 장애인교회와 비장애인교회가 각각 분리 존재하고 있어 교회조차도 장애인이나 장애 아동을 배려하지 않고 차별하는 교회나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 운영은 교회로써의 사회적 책무성을 방기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 부족 등 장애인 사역을 둘러싼 교회의 본질적인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6일 열린 한국 장애인신학회 창립 총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장애인신학회는 발기문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 사역은 단순한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학적·선교적 과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장애인 사역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제는 장애인신학을 정립해 교회 안팎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일보, 2025). 특히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많은 무관심이나 부정적 태도는 먼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바른 해석과 설교를 통해 성경적 장애(인)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은미, 2013 ; 박혜전·조영길, 2009). 또한 목회자의 양성 과정에서부터 신학대학교(원)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교과목의 필수적인 편제를 통해 올바른 인식과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이금섭·배내운·이민호, 2005: 311).

셋째,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성 인식에서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교회-국가의 관계성 확립은 개인적으로나 사회 공동체적으로 모두 중요한데,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국가(정치)적 선택과 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기독교와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자신들과의 경쟁이나 위협으로 간주하여 발전과 확

산을 막았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을 인류의 모든 문제해결 방안을 가진 최종적인 구원자이자 권위자로 여기기도 했다. 즉 국가가 준(準)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교회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체계적으로 억압하며, 때로는 공개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등의 박해를 가했던 것이었다.

독일의 개신교 윤리학자 홀트하우스(Holthaus, 2010)는 나치 시대처럼 국가가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국가-교회 간 관계를 ‘박해받는 신앙’으로 구분했다. 그 밖에도, 그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경우처럼 국가 위에 군림하며 지배한 형태의 ‘정치화된 신앙’, 교회와 국가가 서로 의식적으로 철저히 거리를 두는 ‘분리된 신앙’,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이 국가(정치)에 무지한 ‘무관심한 신앙’ 유형으로 관계성을 구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국가에 대한 관계성 정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형으로 ‘변혁적 신앙’을 말한다. 사실 신앙은 영원한 구원이자 초월적 영역이며, 정치는 세상의 안녕에 대한 것으로 성격상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하지만 신앙과 정치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도 가지는데, 즉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육신의 안녕과 구원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조직 공동체이자 시민으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든 원치 않든 여전히 세상 안에서 정치적 존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복음적 가치관으로 사회 변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사회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참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권리이자 의무 이행을 위한 선한 기회라 볼 수 있다.

또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에서 루터(M. Luther)의 ‘두 왕국 이론(Zwei-Reiche-Lehre)’이 있는데, 이는 국가와 교회를 각각 분리된 권력으로 이해했다. 특히 루터파 교회의 이 주장은 나치가 전체주의적 이념의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이용되었다는 논란도 있다. 즉 세상 왕국과 영적 왕국은 서로 독립적인 통치 원리 입장에서 영적 왕국인 교회의 기능이 사적영역과 개인적 경건의 영역에만 국한되므로, 세상 왕국에 관련된 일은 교회도 세상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해석이다(김용환, 2021: 118, 122). 그러나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국’ 중 어떤 해석이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전자의 두 왕국은 상호 독자적이고 불간섭의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이지만, 후자는 모두 각각 하나님의 통치 질서 속에 있지만,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또 츠빙글리(H. Zwingli), 부처(M. Bucer)와 칼뱅(J. Calvin) 등은 개혁신교회 전통에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서 기독교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함께 고유한 기능과 사명을 주장했다. 또한 나치 저항운동에 적극적이었던 바르트(Bart)와 본회퍼(Bonhöffer)도 그리스도론적으로 세상과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교회와 국가는 고유한 기능과 임무를 인정하며, 교회의 국가화나 국가의 교회화에 반대했다(김선영, 2015: 43, 45, 59, 78 ; 길상엽, 2020: 85-93 ; 최윤배, 2020: 175-180;).

이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는 본질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위한 서로 다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고유한 사명이 있는 반면에,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본질적 도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 권위를 세속 정부에 귀속시키려는 시도나 세속 정부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이분법적인 태도는 옳지 못하다. 특히,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 즉 생명 윤리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사회 정책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충분히 적용 및 반영되도록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따라야 할 것이다(김영한, 2012: 12-13 ; 길상엽, 2020: 82-83).

더 나아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위협할 경우, 입헌주의를 기초로 한 민주사회에서 혁명이나 쿠데타를 통한 기존 질서 파괴나 국가권력의 전복 등 폭력적 저항은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정완, 2018: 57, 61-63 ; 김민석, 2025: 80-81, 90). 이는 교회-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유효한데, 루터도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는 권력이 아닌 이상 세상 당국과 공권력에 순복할 것을 권했다. 또 인권을 무시하고 살인하는 독재정 권이라도 무력을 통한 제거는 반대했는데, 이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것을 강조한 것이다(김기련, 2003: 145-146). 칼뱅의 신정 통치적 사상도, 만일 국가나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정책과 명령의 경우에 국민으로 하여금 모든 권위의 주체이자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불복종할 의무(행 5: 29)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무력, 폭력, 민중의 무질서한 반란 등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법적 질서나 신앙적 양심으로 비폭력적 저항 등 제도 내에서 합법적 저항과 저지 수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세속 질서 속에서 폭력이나 무질서한 반란을 통한 것은 용인되지 않으며,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소통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오갑, 2021: 127- 129; 김민석, 2025: 103-107).

결론적으로, 히틀러 정권은 수많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을 한낱 ‘인종’과 ‘유용성’만을 기준으로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간주하여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를 무자비하게 자행했다. 이러한 나치 정권의 무모하고 반기독교적인 장애인 정책에 대해 일부 신학자나 목회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구 교회 반응과 태도는 침묵을 지나 동조 및 부역 등의 형태를 보인 것이다. 즉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인간(장애인)관, 교회관이나 국가관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다. 더군다나 더욱 고도화된 인공지능(AI)이나 다양한 가치관들이 혼합된 다원화 시대인 21세기 교회는 생명 윤리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입장을 정립하여 빛과 소금으로써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절박함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나치 정권 12년 간의 장애인 탄압 정책에 대한 당시 기독교계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히틀러 정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 많은 국가적 범죄에 대해 기독교 교파나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국내에서 자료수집의 한계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나치 정권에 저항 또는 동조한 기독교 교파나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자세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 정립에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교육부 (2025). 2025 특수교육통계.
- 길상엽 (2020). 교회와 국가의 관계: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36, 82-111.
- 김기련 (2003). 폭력과 전쟁에 대한 마틴 루터의 입장. **韓國教會史學會誌**, 13, 123-150.
- 김기흥 (2023). 사복음서 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사역에 나타난 통합교육적 함의. **신앙과 학문**, 28(2), 51-71.
- 김민석 (2025). 국민 저항권에 대한 공공신학적 접근-법률적·신학적 고찰. **한국조직신학논총**, 79, 79-126.
- 김선권 (2025). 기독교 신학과 인공지능: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한 인간 이해와 신학적 응답. **갱신과 부흥**, 36, 201-236.
- 김선영 (2015). 그리스도는 세상 왕국과 무관하다? -루터의 두 왕국론 재고-. **韓國教會史學會誌**, 40, 41-86.
- 김성원·허계형 (2017). 장애 통합 사역 지원 요소에 대한 예비 목회자들의 인식. **개혁논총**, 43, 127-155.
- 김영한 (2012). 복음주의적 정치관: 정치에 대한 교회의 자세와 역할. **조직신학연구**, 17, 12-38.
- 김용환 (2021). **독일 제3제국 시대의 국가권력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김정완 (2018). 한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정보 기본권', 저항권, 정부형태, 대통령의 임기를 중심으로-. **비교법 연구**, 18(3), 43-89
- 김정훈 (2023). 성경학자가 본 교회와 선교. **아프리카와 미래**, 3, 33-74.
- 김재성 (2023). **현대 개혁주의 교회론** 1, 2. 킹덤 북스.
- 김종복 (2005). **현대 사회의 장애인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역할**. 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 2005 대회 발표 자료.
- 박영호 역 (1985).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인 답변**. Stott, John R. W. (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혜전·조영길 (2009). 장애인 재활과 기독교적 소명. **신앙과 학문**, 14(3), 135-175.
- 이계윤 (1996).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한국특수교육연구소 출판부.
- 이금석·배내운·이민호 (2005). 목회자 양성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297-313.
- 이만식 (2009). 성경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과 장애인을 향한 선한 행위의 진정한 의미.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회교육**, 377, 52-57.
- 이승구 (2003).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SFC.

- 이오갑 (2021). 칼뱅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관현과 국민의 복종 및 저항권을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65, 105-142.
- 이은경 (2012). 한국의 정치 변화와 교회의 정치에 대한 사회 참여 연구. **신학과 선교**, 41, 177-202.
- 이은미 (2013).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연구. **신학과 선교**, 42, 215-246.
- 임일남·이병헌·윤길근·정황순 (2003). **교육학개론**. 동문사.
- 최용준 (2020). **성경적 세계관 강의**. 도서 출판 CUP.
- 최윤배 (2020). 개혁교회 전통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58, 167-211.
- 한정우·장옥례 (2018).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인의 지역 사회 통합예배에 대한 비장애 성도들의 인식. **신학과 사회**, 32(2), 169-210.
- Aly, G. (1985). *Medizin gegen Unbrauchbare*. In: Götz Aly, Jochen August, Peter Chroust(Hg.): Aussonderung und Tod. Die klinische Hinrichtung der Unbrauchbaren. Beiträge zur nationalsozialistischen Gesundheits- und Sozialpolitik. Rotbuch.
- Aly, G. (2005). *Hitlers Volksstaat*. Raub, Rassenkrieg und nationaler Sozialismus. Fischer Verlag.
- Aly, G. (2013). *Die Belasteten. 'Euthanasie' 1939-1945*. Eine Gesellschaftsgeschichte. Fischer Verlag.
- Benzenhöfer, U. (2006). *Zur Genese des Gesetzes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 Verlag Klemm & Oelschläger.
- Berthold, W. (1981). *Die 42 Attentate auf Adolf Hitler*. lanvalet.
- Bock, G. (1986). *Zwangsterilisation im Nationalsozialismus*. Studien zur Rassenpolitik u. Frauenpolitik. Westdeutscher Verlag.
- Das Evangelische Deutschland, 30.7.1944. <https://theologe.de/euthanasie.htm> (검색일 2025.10.12.)
- Hamm, M. (2005). *"Lebensunwert": zerstörte Leben*. Zwangsterilisation und "Euthanasie". Verlag für akademische Schriften.
- Hellmann, M. (1988). *Friedrich von Bodelschwingh d. J.* Widerstand für das Kreuz Christi. Brockhaus.
- Hsselberger, D. (1999). *Das Grundgesetz*. Kommentar fuer die politische Bildung. 11. Aufl. Neuwied. Luchterhand.
- Holthaus, S. (2010). *Christsein und Politik: Zum Verhaeltnis von Staat und Kirche*. Institut fuer Ethik & Werte, Giessen. <https://ethikinstitut.de/politische-ethik/christsein-und-politik-zum-verhaeltnis-von-staat-und-kirche/>(검색일 2026.6.12.)
- Kaiser, J-C., Nowak, K. & Schwartz, M. (1992). *Eugenik, Sterilisation, "Euthanasie"*. Politische Biologie in Deutschland 1895-1945. Eine Dokumentation. Berlin, Dok. Nr. 184.

- Klee, E. (1983). *“Euthanasie” im NS-Staat*. Die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Fischer Verlag.
- Klee, E. (1985). *Dokumente zur “Euthanasie”*. Frankfurt/M.: Fischer Verlag.
- Krumeich, G. (2010). *Nationalsozialismus und Erster Weltkrieg*. Klartext Verlag.
- Mattner, D. (2000). *Behinderte Menschen in der Gesellschaft-Zwischen Ausgrenzung und Integration*. Kohlhammer.
- Piper, E. (2007). *Kurze Geschichte des Nationalsozialismus von 1919 bis heute*. Verlag Hoffmann und Campe.
- Raim, E. (2013). *Zwangssterilisierungen und “Euthanasie” vor Gericht*. Oldenbourg Verlag.
- Wehr, G. (1989). *Gutes tun und nicht müde werden: Ein Jahrhundert Rummelsberger Diakone*. Claudius.
- 국민일보 2025. 12. 6.일자.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 꿈꾼다”. <https://v.daum.net/v/20251206160746565>.(검색일 2026.4.9.).
- 국민일보 2026. 4. 29.일자.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란... “낙태 허용 우려, 태아보호해야”. <https://v.daum.net/v/20260428160133413>.(검색일 2026.6.7.).
- 뉴스1 2026. 5. 31.일자. “청소년 사망원인 14년째 ‘자살’ 1위...정부, 실현가능 대책 모색”. https://v.daum.net/v/20260531150848856?s=print_news(검색일 2026. 6.1.).
- 동아일보 2026. 6. 2.일자. ““연명의료 중단’ 앞당기는 방안 공론화...적극 검토할 때 됐다”. <https://v.daum.net/v/20260602232602201>.(검색일 2026.6.5.).

나치의 장애인 탄압에 대한 독일교회의 태도에서 살펴본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의 신학적 고찰

A Theological Examination of the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German Church's Attitude toward Nazi Persecution of the Disabled

김기흥 (부산교육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써 나치의 장애인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의 탄압 정책에 대한 당시 독일교회의 태도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 신학적 입장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나치 정권의 장애인 탄압 정책은 오로지 '인종'과 '유용성'을 기준으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을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간주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계 교회도 나치 정권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무관심이나 동조 및 협력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세 가지 함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모든 인간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존엄성을 가진 인간관의 정립이 필수 요소이다. 둘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성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분리보다는 통합적 교회 사역이 포함된다. 셋째, 교회와 국가 관계의 핵심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속에서 각자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과 존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히틀러의 장애인 정책,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 교회-국가 관계성